

질문 1)

A회사(제조회사) 2011년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2년뒤 2013년 B회사(건설회사)로 이직을해서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건설업으로 업종이 전환**되었을때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종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했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까요? 업종이 바뀌면 새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걸로 알지만,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신문고 답변]

나.(질의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신규, 보수)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무업종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으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상이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업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이수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 만일, 다른 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시에는 해당업종에 맞는 직무교육(신규)을 다시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B회사(건설회사) 2011년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여 B회사에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뒤 2013년 C회사(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이 되었습니다.

같은 건설업종으로 이수를 하였지만 이직을 하여 사업주가 바뀌었을 경우(B회사에서 C회사)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까요?

[신문고 답변]

나.(질의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신규, 보수)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근무업종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으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상이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업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이수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 만일, 다른 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시에는 해당업종에 맞는 직무교육(신규)을 다시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3)

B회사 (건설회사)에서 2011년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2년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건설업)을 이수했었는데, 이직하여 E회사 (건설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가까이 타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건설업)을 이수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2019년 C회사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8년전에 이수한적이 있는데 새로 C회사에 선임이 되면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문고 답변]

라.(질의3)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산정기간은 기존 사업장에서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했던 기간과 새로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바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사 후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라면 신규교육으로 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4)

B회사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건설업)을 이수하였습니다.

2년정도 근무후 B회사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가 아닌 타 업무를 3년간 진행을 하다가 다시 B회사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간에 다른 업무를 보느라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는 못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B에서 받은 수료증이 있으며,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신문고 답변]

마.(질의4)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해당 직위에서 해제되고 일정한 기간 경과 후 다시 안전관리자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라면 신규교육으로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5)

B회사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B회사의 "안성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안성현장이 5년동안 진행되는 현장이어서 끝난뒤 B회사 동일회사의 "전북현장"으로 안전관리자로 신규 선임이 되었습니다. 같은 동일 회사(사업주가 같음)에서 현장만 바뀌었을 경우 또다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혹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문고 답변]

바.(질의5) 동일한 대표가 여러 개의 사업장(동일 업종) 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각각 선임된 경우라면 1개 사업장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신규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